

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신규 컨설팅사업자 모집공고

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인증·등록취득 지원을 위한 전문 민간 컨설팅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컨설팅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1. 15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. 모집 개요

- 모집대상 : 농식품 해외인증분야 전문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국내 소재 사업자
 -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인증취득·등록 전반 대행
- 수행사업 :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
 - 대상인증 :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(별첨)

할랄(JAKIM, BPJPH, MUIS, KMF 등), GFSI 승인인증(FSSC22000, ISO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 등), 미국 FDA, 해외유기인증, 코셔 등

- *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에 대한 식품안전·품질, 법적기준 및 인증기준,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(단순 분석의뢰, 공증 대행, 번역 등은 미해당)
- * 지원제도는 '24년 사업계획 확정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- 접수기간 : '24. 1. 15.(월) ~ 1. 30(화) 까지 / 2주간
- 신청방법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

2. 등록 기준

- 선정절차 : 대상업체 서류심사 이후 '24년 컨설팅사 POOL등록
- 등록기간 : 2년 (1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유지)
 - 사업자 자격요건 및 컨설턴트 자격요건(세부내역은 6번 자격요건 참조)

구 분	자격요건
등록대상 (사업자)	•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 관련 최근 2년 내 10건이상 해외인증등록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하며, 자격을 갖춘 상근 컨설턴트 1명이상 보유
자격요건 (컨설턴트)	•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 관련 최근 2년 내 5건이상 해외인증등록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 및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(6번 자격요건 참조)

*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2.1.1.~2024.1.14.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 기준

* 컨설턴트는 법인 소속 또는 개인사업자로 택일하여 신청(복수지원 불가)

- 등록 제외 : 등록 제외 대상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3. 제출방법

- 모든 서류는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통해 온라인 제출

순서	구비서류 목록	제출 부수
1	• 컨설팅사 등록신청서 (별첨1)	1부
2	① 컨설턴트 보유현황 및 컨설턴트별 프로필 (별첨2) -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등록 증빙자료 목록 등 제출 必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[붙임포함] (별첨3)	컨설턴트별 각 1부
3	• 최근 2개년('22~23년) 컨설팅사 컨설팅 수행 실적 (별첨4) (컨설팅 계약서, 취득 인증서 사본 포함필수) *사본 경우, 원본 대조필 날인 - 컨설팅사 등록 증빙자료 목록(양식) 제출必	1부
4	•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(상근 컨설턴트 확인용) -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개인별 보험 자격득실 포함	1부
5	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컨설팅사업자 유의사항 인지조서(별첨5)	1부
6	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(별첨6)	각 1부
7	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확인서 원본	공동인증서를 통한 간편제출 (aT원패스)
8	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총2종 원본 (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	
9	• 최근 2개년(21~22년) 재무제표(법인)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개인사업자)	

4.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된 수행사는 '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컨설팅사 풀(POOL)에 등록되며, 2024년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·등록 관련 컨설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
- 컨설팅사업자는 등록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참여 기간 동안 등록기준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
- 등록제외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즉시 aT에 통보하여야 하며, 등록취소 및 지원사업 컨설팅비용 정산 시 제외될 수 있음
- 등록 시 제출한 컨설팅사업자의 현황(일반현황, 컨설팅분야, 컨설턴트 현황) 및 직전연도 컨설팅 실적(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서 수행한 건에 한함)은 aT 홈페이지,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수출업체 등에게 제공되며,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aT에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
* 주요 변경사항 : 컨설팅분야, 컨설턴트 현황, 사업자현황(연락처, 이메일, 주소)
- 제출기한 종료이후 증명서 부실, 누락 등 서류구비 불완전 등 사유로 평가 제외 가능

5. 자격요건 및 등록 제외대상

□ 사업자 자격요건

-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(별첨목록 참고) 관련 최근 2년 내 10건 이상 해외인증·등록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, 자격을 갖춘 상근컨설턴트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

*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2.1.1.~2024.1.14.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 기준

** 단,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설립일이 2년 이내의 사업자는 5건 이상 관련 실적 보유

*** 실적은 인증·등록 완료 건만 인정(진행 중인 건 불인정)

□ 상근 컨설턴트 자격요건

- 지원사업 대상 인증제도(별첨목록 참고) 관련 최근 2년 내 5건 이상 해외인증·등록컨설팅 수행실적 보유 및 다음의 각 호의 학력·경력·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

- 1)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, 해외 인증·등록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- 2)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, 해외 인증·등록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- 3) 학사 학위(학사 이하 포함)를 보유하고, 해외 인증·등록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- 4)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, 해외 인증·등록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- 5)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, 해외 인증·등록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
*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2.1.1.~2024.1.14.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기준으로 인증·등록완료 건만 인정(5건 이상)

□ 등록 제외대상

- 부도·화의·법정관리중인 사업자 및 휴·폐업중인 사업자
- 국세·지방세, 4대 보험료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업자
- 컨설팅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기업, 지자체,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 또는 제재 이력(진행중인 건 포함)이 있는 부정수급 수출업체 및 관련된 그 대행 컨설팅기관

☐ 등록 제한사유

- 등록 관련 서류를 위·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등록 관련 증빙 제출 또는 추가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민원발생, 운영기준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한 점검·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- 등록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농식품 해외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
- 지원사업 정산 시 컨설팅내역 등의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 제안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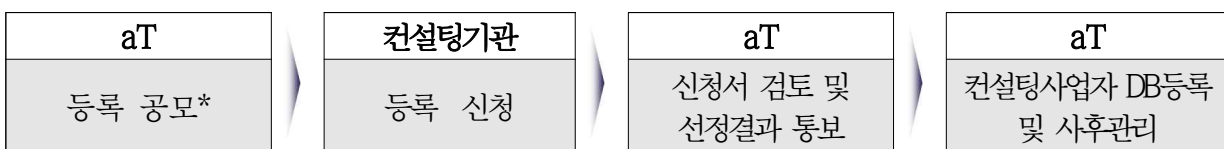
6. 서류심사기준 및 등록결과

☐ 대상업체 서류심사

- 등록기준 자격요건 충족여부
- 등록 제외·제한대상 미해당 여부
- 필수 구비서류 적정여부
-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

※ 과거 수출업체 컨설팅 진행사항 관련하여 추가 서류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
☐ 추진절차



☐ 등록결과 : 2024. 2. 6.(화)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발표(추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)

7. 문의처 : aT 수출기업육성부 ☎061-931-0864

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